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TAX-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 유럽연합(EU): 공공 국가별보고서 요건에 대한 합의

2021년 6월 1일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공공 국가별보고서(Public CbCR) 요건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이사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EU 회원국 내 본사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2개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를 초과하고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은 EU 회원국 및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 조세분야 비 협조 지역(EU에서 조세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EU 이사회 결정 안 부록 1에 분류한 국가)

삼정 KPMG

TAX 6 본부

21 June 2021

####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 조세분야 비 협조 의심 지역(EU에서 조세 불공정 행위가 의심된다고 판단(2년간 EU에 의해 관찰)하여 EU 이사회 결정안 부록 2에 분류한 국가).

유럽의회의 발표(일반적으로 EU 이사회의 입장과 일치함)에 따르면 다음 정보가 공시되어야 합니다.

- 기업의 사업활동 내용
- 상근 종업원수
- 세전이익(손실)
- 누적 및 납부 법인세 및 이익잉여금.

세이프가드 조항(safeguard clause)에 따라 EU 기업은 특정 조건 하에서 최대 5년 동안 특정 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기존 제안된 6년에서 5년으로 단축).

보고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향후 일정

잠정 합의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관련 기구의 승인을 위해 제출될 예정입니다. 잠정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초기 심의 과정에서 합의안의 내용이 채택되어 유럽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U 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18개월 내에 관련 지침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일자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잠정 합의안의 채택 및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상되는 시행일자는 2024년 1월 1일이나 EU 회원국의 결정과정에 따라 시행일자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싱가포르 국세청 e-Tax 지침서(2021.03): 다국적기업의 그룹내 사업활동(Centralised Activities)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발간한 e-Tax 지침서는 본사와 관련된 이전가격세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대부분의 e-Tax 지침서 내용은 싱가포르의 이전가격 지침서와 일치합니다. 납세자는 정상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을 수행하고 그룹내 사업활동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e-Tax 지침서에 명시된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약 USD 10,000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e-Tax 지침서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및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s, "MAP")에 대한 조세 전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e-Tax 지침서는 지역 본부가 수행하는 그룹내 사업활동의 범위와 정도가 상이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본부가 단순히 후방지원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며, 별도로 유통, 제조, 연구개발 등 주된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Tax 지침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본부가 용역 제공자일 경우, 기능 수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 원가가산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본부가 판매법인이면서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을 기반으로 산출된 수익률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본부가 판매법인이면서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 중심의 수익성 지표가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본부가 영위하는 사업의 핵심 프로세스에 관여를 하고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이익분할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KPMG 의견**

IRAS는 싱가포르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전가격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IRAS의 이전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e-Tax 지침서는 지역 본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수준을 산출 시 수행한 기능, 부담한 위험 및 사용된 자산에 비례 해야함을 명시함으로써 원가가산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납세자는 그룹내 사업활동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가격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 문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관세 Update

### 베트남 EPE 제도 세관 검사 및 감시 조건 신설 규정에 대한 베트남 관세청 의견

#### **규정 신설 배경**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업이 원재료 등을 수입 시 해당 원재료 등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유보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베트남의 EPE 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베트남 관세당국은 지난 2021년 4월 25일 세관 검사 및 감시 조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신설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부 영역과 분리된 견고한 울타리를 구비할 것
- 24시간 내내(공휴일 및 휴일 포함) 출입구 및 물품 보관장소를 감시하는 카메라 시스템 구비할 것
-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사용 현황에 대한 수입, 수출 및 재고의 결산 보고(Customs Finalization Report, "CFR")를 위해 EPE의 비과세 수입물품 관리 소프트웨어(Software)를 구비할 것

#### **신설 규정에 대한 베트남 관세청 유권해석**

동 신설 규정의 실무적 이행과 관련하여 결산 보고를 위한 EPE 비과세 수입물품 관리 소프트웨어에 어떠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 베트남 소재 한국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관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이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베트남 관세청의 상세 가이드가 제공되었습니다. 베트남 관세청의 신설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외부구역과 분리되는 견고한 울타리 관련**

수출구역과 비수출구역에서 생산장비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은 해당 구역에 대한 설명 및 사진 등과 함께 상세 처리방안에 대한 근거 규정 추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 **물품 보관장소 내 감시 카메라(CCTV) 관련**

감시 카메라(CCTV)가 설치되어야 하는 구역은 원자재, 물자, 반제품, 완제품, 기계, 장비 및 기타 각종 비과세 물품 보관 창고 등과 같이 물품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수출기업의 각 구역입니다. 다만, 공장, 사무실, 사내 식당 등과 같이 생산이나 상품 사용을 위한 구역이 아닌 기타 구역에 대해서는 CCTV가 설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은 관세당국의 관리감독 이행을 위해 IP주소,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제공 등을 통해 CCTV 데이터를 공유하여야 합니다. 관세당국은 CCTV 데이터 공유를 위해 관세기관과 기업 간 데이터 교환 관련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완료 시 이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비과세 수입물품 관리 소프트웨어(Software) 관련**

EPE기업이 자체 구축한 비과세 수출입 물품 관리 소프트웨어는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 등 및 수입된 원자재 등으로 생산된 물품의 입고, 출고, 반출 사용 시점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관리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세관의 현장 실사 및 검증 시 세관담당자가 결산 보고용 소프트웨어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원자재 등이 모니터링되고 관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 ▪ **한국 기업과의 면담 요청 관련**

향후 한국기업에 최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세당국은 각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온라인 면담을 개최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당국 국제협력국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협의 후 결정될 것입니다.

#### **KPMG 의견**

신규로 EPE를 취득하려는 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EPE 기업 또한 EPE 유지를 위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설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금번 유권해석에 따라 EPE 비과세 수입물품 관리 소프트웨어 도입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해당 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국제조세, OECD Update**

#### **G7 국제조세 개혁 합의로 미뤄본 향후 BEPS 2.0 전망**

##### **개요**

2021년 6월 5일 G7은 OECD와 G20이 주도하는 포괄적 협의체 간의 BEPS 포괄적 이행체제 협상에 개혁적인 탄력을 가하는 합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G7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를 포함하며, 해당 G7 국가들의 합의문은 국제조세 분쟁 장애물을 제거하여 궁극적인 글로벌 협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합의문은 7월 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개정된 국제세율 규정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과세 협정은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동안 세계적인 국제조세 체제 타협을 모색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제조세 체계의 큰 역사적 변화를 의미할 것입니다.

**(1) 발표 내용: G7은 과세권 배분에 대한 공평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시장 관할권 국가는 대규모이며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기업에 대해 10% 마진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최소 20% 이상을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BEPS 2.0에 대한 영향 및 예상 동향:**

1) 지난해 OECD가 발표했던 Pillar 1의 Blueprint에 의하면 과세권을 배부하는 데에 있어 기초가 되는 이익 배분 방식을 하기 3단계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① 다국적 기업 A의 매출 X (A기업 조정 후 세전 이익률 - 기준이익률)= A기업 초과이익

② A기업 초과이익 X 재배분율 = 전체 시장소재국에 배분될 과세소득(시장기여분)

③ 배분대상 과세소득 X 배분지표(allocation key) = 개별 시장소재국에 배분될 과세소득

2) 이번 발표를 통해 상기 공식 상의 기준이익률을 10%로, 재배분율을 20%로 새롭게 정의한 것으로 보이며, 다음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그대로 채택될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3) 다만, 이번 발표에서 Pillar 1 과세 대상 업종(소비자 대상기업 혹은 자동화 기반 디지털 서비스) 및 과세 대상 기업 규모 기준 등에 대해서 구체화되지 않아 다음달 G20 재무장관 회의 승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발표 내용: G7은 국가별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BEPS 2.0에 대한 영향 및 예상 동향:**

1) 지난해 OECD가 발표했던 Pillar 2의 Blueprint에서 제시하였던 글로벌 최저한세가 15%로 구체화되었습니다.

2) 이번 발표를 통해 특정 조세 관할권의 유효세율이 15%의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저세율 국가로 지정되어 Pillar2의 Blueprint에서 제시된 원천지국과세 규칙 혹은 세원잠식방지 규칙 등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번 합의에 따라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각국에서 거둔 막대한 비과세이익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며, 동시에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기업들의 본부를 유지해 경제를 지탱해온 나라들과 개발도상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4) 이번 G7 합의가 적용되면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글로벌 인바운드 기업들이 한국에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최대 수천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G7이 합의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15%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인세를 합산한 수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 미칠 영향**

1) 최종 합의안에 따라 일부 국내 대기업의 경우 미국·유럽 등 국가 내 법인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며, 해외매출 규모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G7 회의에서 최저한세율이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대응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향후 진행 상황을 봐야 하는 단계이며, 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G7은 이번 달 11~13일 G7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 9~10일 G20 재무장관 회의, 올해 10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 및 OECD 회의에 합의안을 제안하겠다는 방침임에 따라, 향후 Pillar 1에서의 과세 대상 업종 및 과세 대상 기업의 규모 기준에 대해 구체화되는 내용과 Pillar 2에서의 최저한세율에 대한 변동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KPMG 의견

### 제안된 접근법의 구조

국제조세의 두 핵심 문제는 두 접근법(Pillar 1, 2)으로 해결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접근법인 Pillar 1은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과세이익을 “시장관할권”으로 재배치하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접근법 Pillar 2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다국적기업에 대한 전세계 최저 실효세율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Pillar 1, 2의 목적은 기업들이 사업활동을 위해 선택적으로 소재한 조세관할권에서의 조세회피 효과를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제안된 포괄적 이행체제 Pillar 2의 접근법은 미국의 기존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세제개혁안과 더불어 G7이 합의한 포괄적 이행체제(미국기업 외 다국적기업 적용)는 미국 내국세법(다국적 미국 기업 적용)과의 차이점을 일정 부분 일치하게 적용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 Pillar 1과 관련하여 합의가 필요한 사항

시장 관할권 국가는 Pillar 1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 세금 제도(DST; “Digital Services Taxes”) 혹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유사한 세금 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대규모 다국적 납세자의 글로벌 이익에 대한 더 큰 과세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Pillar 1 규정 도입 방안에 대하여 여전히 합의되어야 할 세 가지 주요 사항 및 기타 많은 실무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과세 대상 다국적 기업의 규모 기준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상위 100 개 기업만 포괄하는 범위에서 2,000개 이상의 기업을 포괄하는 범위로 과세 대상 기업 규모 기준이 확대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 대상 매출 규모 임계값 설정과 관련하여 현재 200억 유로에서 7억 5천만 유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 혹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대한 Pillar 1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추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천연자원 및 관련 상품 업종의 경우 Pillar 1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금융기관, 부동산, 인프라, 항공 및 해운업종에 대한



Pillar 1 적용 예외 규정 또한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적용 예외 업종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Pillar 1 규정에 따라 시장 관할권에 재할당될 이익 수준과 관련하여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G7이 발표한 논의 내용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10%의 수익률 임계값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한 최소 20% 이상의 수익 배부를 통하여 과세권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글로벌 매출이 200억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의 판매 수익률 10% 초과 수익의 20% 수준이 시장 관할권에 배부되어 과세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재배분율은 시장 관할권에 배부될 이익의 규모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포괄적 협의체의 139개 회원국 중 다수 국가의 핵심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

Pillar 2의 주요 쟁점은 139개 포괄적 협의체 간의 글로벌 최저한세 세율 협상입니다. G7 성명서는 최소 15%의 유효 세율을 추구하고, 해당 세율은 글로벌 또는 법인별 기준이 아닌 국가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각 국가의 다국적기업은 최소 세율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만약 최소 세율이 충족되지 않을 시 "추가 과세("Top-up Tax)"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는 법인세율이 낮거나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가 영향을 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Pillar 2의 세율 계산방법, 세금 부과 방법 및 적용 기업의 규모, 그리고 다른 국제조세 규칙과의 접점에 대한 많은 기술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 **대규모 다국적 납세자에 대한 영향 및 결과**

G7 합의문은 개별 다국적기업이 최종적 규칙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경우 G7 합의문은 단순한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닌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과의 적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조기 대응을 통해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과의 적시 커뮤니케이션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회계/세무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포함됩니다. 다국적기업은 기존 그룹 구조와 그룹 내 거래 약정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 아니면 구조적 조정이 필요한 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더불어, 제안된 규칙이 다국적기업에 주는 재정적 영향은 다국적 납세자의 복잡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할 시 계산되기 쉽지 않습니다. 제안된 규칙이 다국적기업에 주는 재정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KPMG는 영향 분석을 지원하는 Modelling Tool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Modelling Tool은 과세관할권 ("Jurisdictional Tax Footprint")이 어떻게 변경될 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새로이 고려해야 되는 세무 규칙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까지는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있지만, 2021년 6월 5일 합의문에서 G7이 보여준 정치적 의지를 감안할 시 합의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직 다른 포괄적 협의체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과의 논쟁점으로 남아있는 특정 산업 및 부분 또는 상업 활동을 대상으로 설계된 모든 일방적 세무 조치의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G7 합의문이 포함됩니다. BEPS 2.0에 적용되는 다국적기업들은 BEPS 2.0의 단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rivacy](#) | [Legal](#) | [Unsubscribe](#)  
INTERNAL USE ONLY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

[kpmg.com/socialmedia](https://kpmg.com/socialmedia)



[kpmg.com/app](https://kpmg.com/app)

